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.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
및 관리 조례안
(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추 병 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40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

- 1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

2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

3)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4)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(안 제6조 및 제7조)
- 5)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への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

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☐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[시행 2025. 2. 17.] [법률 제19674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☐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6. 29.] [법률 제19302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